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선거사무원(사전투표일, 투표일),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 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은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

제 정 안	수 정 안
제14조(특별휴가) ① ~ ⑤ (생략) <u>&lt;신 설&gt;</u>	제14조(특별휴가) ① ~ ⑤ (현행 과 같음) <u>⑥ 선거사무원(사전투표일, 투표일),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 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은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</u>